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10. 17 선고 2024가단1035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2022. 9.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9. 20. 접수 제5632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카드 대출금 채권 등의 발생 및 양수

- 1) 주식회사 E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585720호로 D을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명목으로 3,044,003원과 그중 2,850,88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23.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2014.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2) 주식회사 E는 2021. 3. 4.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21. 7. 14. D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021. 2. 3. 기준으로 D의 위 채무는 원금 2,850,882원, 수수료이자법적비용 등 5,057,371원이 있는 상태였다.

나. 증여계약의 체결 등

- 1) D은 2022. 9. 19. 남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3분의 1을 증여하였고, 다음 날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2) 주문 기재 증여계약 체결 무렵 D은 보유한 부동산이 없었고 1,960여 만 원의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 부채가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양수한 D에 대한 신용카드 대출금 채권이 주문 기재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이상,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D이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동생인 피고와 주문 기재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원고 등 자신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D과 피고의 악의는 모두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증여계약 체결 당시 D이 집안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받기만 했으며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준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에도 앞서 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결론

피고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2022. 9. 19.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9. 20. 접수 제5632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권순향

별지